

3번의 불승인 뒤, 법원은 '산재' 인정했다.. 경비업무 관리자 과로사 판결 항소심 승소 사례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법원曰 “기저질환 있었어도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어”

사건요약

2020년, 한 경비관리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3차례 불승인과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숨겨진 근무시간과 업무환경을 근거로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배경

2020년 11월, 한 경비인력 관리부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 K씨는 국토안전관리 한 회사의 건설현장 경비용역계약 및 경비인력을 관리하던 관리부장으로 약 10년간 재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K씨는 현장 출장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타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낸 후, 차량 안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처치를 받았으나, 뇌내출혈을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K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 발병 전 K씨에게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K씨의 업무상 부담이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고혈압, 간경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사망과 해당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불승인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결과에 불복하여 곧바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마중의 변론 및 결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 3항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쟁점1 K씨의 실제 근무시간과 공단 산정치의 불일치

근로복지공단은 1심 당시 K씨의 업무 시간을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 발병 전 1주 평균 / 12주 평균 모두 약 49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 근무시간보다 과소평가된 결과치였습니다.

K씨는 보통 본사 출근 시 통상적으로 약 오전 7시 반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공단은 본사 출입경비시스템에 K씨의 기록이 남지 않은 근무일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추측, 이에 기반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기록이 찍히지 않은 날의 업무 내역이 다른 일반적인 근무일의 업무 일지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일련의 날들의 출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9시로 산정해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방식이었고, 때문에 실 근무시간 역시 공단이 산정한 시간보다 길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또한 공단 역시 산정된 업무 시간 외에도 K씨의 외부 근무 기록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 산정 내역에 K씨가 수행한 야간 업무 등에 대한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 K씨의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마중은 동료의 증언을 확보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K씨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늘 휴일이 부족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K씨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 3항 및 인정기준 제 1호 가목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쟁점2 업무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K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출근 전과 퇴근 후, 그리고 휴일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며 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약 1달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주말을 포함, 19일동안 연속으로 출근하였던 점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쉰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근무환경은 K씨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

법무법인
마중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니다.

더불어 해당 업무가 현장 내 돌발 상황 해결을 위해 사전에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현장 근무와 출장이 빈번하였으며, 경비용역계약 수주 업무로 인해 여러 부담을 떠안았다는 점 역시 K씨의 스트레스 심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3 기저질환과의 관계

기존 1심은 K씨의 고혈압 및 만성 간질환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상병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주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병 발병의 원인에 있어 K씨가 겪어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여러 자료 및 의료자문을 통해 K씨의 기존 질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었음을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단순한 기저질환만으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판결이 취소되어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

이 사건은 3번의 불승인과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법률대리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산재로 인정된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기존 공단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되었던 근무시간을 뒤집고 여러 업무적 요인들을 고려해 누락된 근무시간까지 추가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저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을 가하는 요소들이 상병 발병의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이번 판결은, 복합적 건강 상태와 업무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 산재 사건에 있어 인정 기준을 넓히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저희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특화된 로펌으로, 신청부터 소송, 합의, 유관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yvince@majunglaw.kr

김치세
선임변호사

chise@majunglaw.kr

* 법무법인 마중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마중의 공식적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광화문 | 대전 | 부산 | 대구 | 광주